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十 행동 지침 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미가서

포기하지 말라

(미가 1:1-16)

원로목사 이종윤

조선지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백성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한 책입니다.

미가서의 역사적 배경은 열왕기하 18-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앗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이 북 왕국 사마리아를 침략했습니다. 사마리아는 포위를 당하여 항복을 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로부터 8년 후에 살만에셀의 후계자인 산헤립 왕이 남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때 산헤립은 히스기야 왕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앗수르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말에 속지 말라”(왕하 19:10). 히스기야 왕은 이 편지를 들고 여호와와의 전으로 올라가 간곡한 기도를 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그날 밤 18만5천 명의 앗수르 군대가 전멸했습니다. 이 시대에 예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이같이 미가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한 묵시였습니다.

1. 사마리아의 타락상

“백성들이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시실 것이니라”(2절).

미가는 이스라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부릅니다. 미가 선지자는 성전에 계시는 주님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재의 처소를 성전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3절).

사마리아는 교만으로 인하여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곳, 곧 교만한 사람들을 짓밟으십니다. 하나님의 밟으시는 발 아래서 산들은 녹아버리고 골짜기가 갈라지게 됩니다(4절).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것밖에는 보지 못하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 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6절).

‘내가’, 곧 하나님께서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7절). 음행은 영적 음행, 곧 우상숭배와 같은 죄로 간주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미워하시므로 사마리아는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떠났고, 심지어는 앗수르가 침략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기물들을 앗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감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왕하17장).

2. 죄의 파급

먼저 북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어서 남 유다가 망했습니다. 죄는 파급이 됩니다. 북쪽의 죄가 남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 같이 애곡하고 타조 같이 애통하리니”(8절).

선지자는 타조처럼 크게 울면서 회개를 재촉합니다. 선지자는 들개처럼, 타조처럼 울면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선지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회개할 것을 지적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름을 받았으면 이름값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16절).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이 망했다가 다시 부흥하는 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요담과 아하스 왕 시대를 지나 히스기야 왕 때에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미가는 적어도 20년 혹은 25년 동안 참고 기다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세계 제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후에 모교로부터 연설을 요청 받았습니다. 그는 한참 후에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코 절단코. 절단코 포기하지 말라(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give up)” 너무나도 유명한 연설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25년을 기다렸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죽은 자와 방황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이 말씀을 믿고 주님만을 향하여 전진의 걸음을 걷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총회 재판국 결정문

박노철 목사 청빙 무효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임직도 무효 위임목사 지위는 부존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제101회 총회 주제: "다시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1:17, 레위기 19:20"

행정지원본부 03128 서울시 중구 대학로3길 29, 309호(연희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전화: (02)741-4350(442911) 29호 (02)6008-2962 담당: 홍연애 실장

문서번호: 행정총회 제101-527호
시행일: 2017. 9. 14.
수신: 노윤환 장로
참조: 노윤환 장로
제목: **판결 통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본 재판국은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노윤환 장로 외 3인이 서울강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박노철 목사 청빙허락 결의 무효 확인소송 진)"(사건번호: 제101-07호)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제3편(관장) 제33조(일임소송결정) 제34조(판결의 확정) 제35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제36조(재판소달의 기일)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판결 통보합니다.

첨부: 총회 재판국 판결문, 끝.

101

재판국
국장 서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판결

사건번호: 예총재판국 사건 제101-07호

사건명: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노윤환 장로 외 3인이 서울강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박노철 목사 청빙허락 결의 무효 확인소송 진)"

원고: 1. 노윤환, 성별: 남 직분: 장로
2. 서문석, 성별: 남 직분: 장로
3. 양준경, 성별: 남 직분: 장로
4. 최광성, 성별: 남 직분: 장로

피고: 서울강남노회장 김예식, 성별: 여자 직분: 목사

제3자 소송참가인: 박노철(서울교회 위임목사), 성별: 남 직분: 장로

제3자 소송참가인의 변호인: 변호사 홍종자, 성별: 남 직분: 장로

행정쟁송의 종류: 결의무효 확인 및 무효확인 등의 소송

별론종결일: 2017년 9월 11일
판결선고일: 2017년 9월 11일

주 문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가 2011년 11월 8일 제49회 정기회에서(당시 노회장 김학현 목사)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에 대하여 한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허락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제3자 소송참가인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 임직은 무효이고 그 지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청구취지임

판결이유

1. 기초사실
가. 박노철 목사는 1996.2.22. 합동 측 직영신학대학원 출신대학원의 연구과정을 마친 후 1998.10.13. 합동 측 동서울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중현교의 부목사로 시무하다가 1999.9. 시무사면 이후 무임목사를 거쳐 2005.4. 별명부에 등재되었으며, 중현교의 시무사면 이후 침례교단 소속의 분당지구총교회를 거쳐 2005.경 구리지구총교회를 개척하여 담임목사로 시무하다가 2009.6. 본 교단으로 청빙을 받았다. 위 동서울노회에서는 2017.4. 노회 이전 타 교단으로의 이적이 확인되어 별명부 명단의 오류정리 차원에서 삭제됨으로써 행정상 제명처리가 되었다. 합동 측 교단에서는 이중교적이 원천적으로 허락되지 않게 되어 있다.

나. 타 교단에 속한 목사가 본 교단 목사고시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본 교단 직영신학대학원에서 1년 이상의 이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박노철 목사는 2009.9.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장신대) 청목과정에 들어가 1년 이상 이수하지 않은 2010.5. 목사고시공고 제출서류 목록에 정해진 청목과정 수료증명서가 아닌 단순한 이수예정확인서만을 토대로 본 교단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설교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한 합격처분을 받았고 이후 2011.5. 설교과목에 재응시 하여 2011.7.29. 최종 합격하였다.

헌법 정칙 제29조, 권징관 제164조.

5. 결론
그렇다면 박노철 목사의 목사고시 합격은 무효이고 헌법상 필요한 타교단 목사의 청빙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청빙을 받은 것이므로 2011.11.8.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 제49회 정기회에서 이루어진 박노철 목사에 대한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허락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나아가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임직 또한 무효로서 그 위임목사의 지위가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 권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위와 같이 판결한다.
2017년 9월 1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행정쟁송재판장
국원

다. 타 교단 소속목사가 본 교단의 목사로 청빙 받기 위하여는 해당 교단의 직영신학대학원 졸업자이어야 하는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목사이던 박노철 목사는 합동 측 직영 신학대학원의 정식 학위과정(학위)이 아닌 단순한 이학의 연구과정만 마쳤고 따라서 연구과정만 마친 박노철 목사의 정식 학위과정(M.Div)에 편입되거나 졸업자가 아닌에도 이학사에 M.Div. 편입 및 졸업이라고 기재하였다.

2. 증거의 요지
가. 총회헌법(2010년 5월 당시) 정칙 제31조
나. 2011년 7월 29일자, 총회목사고시 합격자 명단(전체)
다. 서울교회 홈페이지(2011. 8. 7. 순례자, 박노철 목사 총회목사고시 합격)
라. 서울교회에서 강남노회 제49회총회(2011.11.8.) 개최(회주부보)
마. 2010년 총회목사고시공고문
바. 총회재판국의 장로직신학대학원 총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동서울노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박노철 목사의 이력서 및 총신대학원 졸업증명서
사. 원고와 피고의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3. 총회재판국의 판단
가. 박노철 목사가 본 교단 목사 고시에 응시한 2010.5. 당시의 응시자격에 관한 총회 헌법 정칙 제31조 제1항, 헌법시행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로서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1년 이상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총회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직상에서 서약을 한 자는 본 총회신학 소속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교파 목사가 소속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았던 그 노회에 가입을 청원하고 가입이 허락되면 추천을 받아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신대원)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노철 목사는 2009.9. 위 청목과정에 입학하여 1년의 이수기간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2010.5. 실시된 목사고시에 단순한 이수예정확인서만 제출하여 설교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합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따라서 박노철 목사에 대한 목사고시 합격처분은 적법한 응시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나. 또한 총회 헌법 정칙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 교단 소속목사가 본 교단의 목사로 청빙 받기 위하여는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청빙결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헌법시행규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박노철 목사의 경우에는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에 해당하는 합동 측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이어야 한다. 그런데 박노철 목사가 제출한 총신대학원 졸업증명서 기재에 의하면 박노철 목사는 합동 측 총신대학원 정식 학위과정(M.Div) 졸업이 아닌 단순한 연구과정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역시 위 청빙처분을 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또 연구과정만 이수한 총신대학원의 정식 학위과정(M.Div)에 편입하여 졸업한 자가 아님에도 서울교회에 청빙당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총신대학원 M.Div. 편입 및 졸업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자신의 학력에 관한 중대한 허위표기에 해당하여 이 역시 청빙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라. 그뿐 아니라 본 교단에서 타 교단 소속목사의 청빙을 위하여는 헌법 정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이어야 한다. 그런데 당 재판국의 합동 측 동서울노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본 이력서 기재에 의하면 박노철 목사는 1998.10.13. 합동 측 동서울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중현교의 부목사로 시무하다가 1999.9. 시무사면 이후 무임목사 위치로 등재되고 이후 소속노회에 자신에 대한 어떠한 상황도 보고나 소명이 없어 2005.4. 별명부에 등재되었으며 2017.4. 노회 이전 타교단으로의 이적이 확인되어 별명부 명단의 오류정리 차원에서 삭제됨으로써 행정상 제명처리가 되었으며 합동 측 교단에서는 이중교적이 원천적으로 허락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박노철 목사는 위 중현교의 시무사면 이후 침례교단 소속의 분당지구총교회를 거쳐 2005.경 구리지구총교회를 개척하여 담임목사로 시무함으로써 적어도 그때부터는 이중교적이 허용되지 않는 합동측 헌법에 따라 해당교단의 목사직을 상실하였고 그 상태에서 2009.6. 본 교단으로 청빙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청빙당시 해당교단에 속한 목사이어야 한다는 청빙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청빙허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점에서도 위 청빙허락은 무효라 할 것이다.

마. 제3자 소송참가인 박노철 목사의 변호인은 이 소송의 원고들이 현재 서울강남노회의 총대원이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고 또 원고들이 위 결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 재판국의 위는 소송의 제기 때 필요한 요건이지 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조건은 아니며 할 것이다. 또한 위 결의당시 참여한 원고 노윤환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그때부터 위와 같은 결의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헌법 및 규정의 적용
총회헌법(2010년 5월 당시) 정칙 제31조, 헌법시행규정 제23조.

이상의 이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박노철 목사는 2009.9.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장신대) 청목과정에 들어가 1년 이상 이수하지 않은 2010.5. 목사고시공고 제출서류 목록에 정해진 청목과정 수료증명서가 아닌 단순한 이수예정확인서만을 토대로 본 교단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설교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한 합격처분을 받았고 이후 2011.5. 설교과목에 재응시 하여 2011.7.29. 최종 합격하였다.

다. 타 교단 소속목사가 본 교단의 목사로 청빙 받기 위하여는 해당 교단의 직영신학대학원 졸업자이어야 하는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목사이던 박노철 목사는 합동 측 직영 신학대학원의 정식 학위

지난 주 총회 재판국 결정문을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요청으로 결정문과 사실확인 된 내용들을 자세히 씁니다.
(편집부)

판결이유

1. 기초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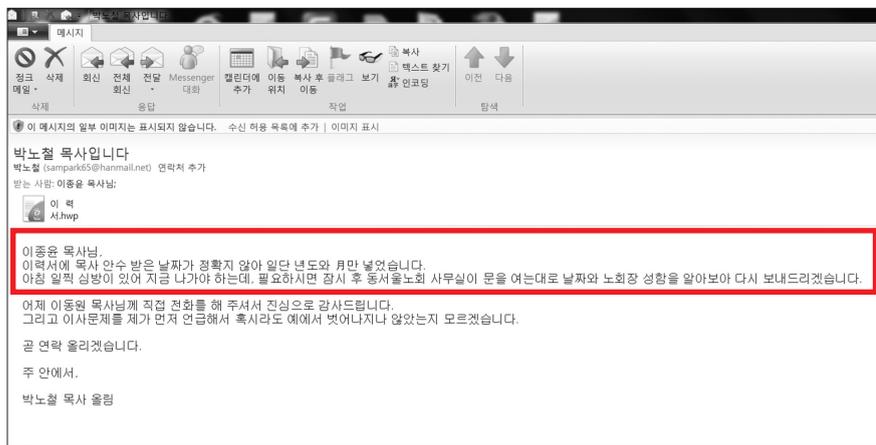
가. 박노철 목사는 1996.2.22. 합동 측 직영신학대학원 출신대학원의 연구과정을 마친 후 1998.10.13. 합동 측 동서울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중현교회

부목사로 시무하다가 1999.9. 시무사면 이후 무임목사를 거쳐 2005.4. 별명부에 등재되었으며, 중현교회 시무사면 이후 침례교단 소속의 분당지구총교회를 거쳐 2005.경 구리지구총교회를 개척하여 담임목사로 시무하다가 2009.6. 본 교단으로 청빙을 받았다. 위 동서울노회에서는 2017.4. 노회 이전 타 교단으로의 이적이 확인되어 별명부 명단의 오류정리 차원에서 삭제됨으로써 행정상 제명처리가 되었다. 합동 측 교단에서는 이중교적이 원천적으로 허락되지 않게 되어 있다.

나. 타 교단에 속한 목사가 본 교단 목사고시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본 교단 직영신학대학원에서 1년

이상의 이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박노철 목사는 2009.9.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장신대) 청목과정에 들어가 1년 이상 이수하지 않은 2010.5. 목사고시공고 제출서류 목록에 정해진 청목과정 수료증명서가 아닌 단순한 이수예정확인서만을 토대로 본 교단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설교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한 합격처분을 받았고 이후 2011.5. 설교과목에 재응시 하여 2011.7.29. 최종 합격하였다.

다. 타 교단 소속목사가 본 교단의 목사로 청빙 받기 위하여는 해당 교단의 직영신학대학원 졸업자이어야 하는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목사이던 박노철 목사는 합동 측 직영 신학대학원의 정식 학위



▶ 박노철 목사가 2009년 4월 17일 이중윤 목사에게 보낸 메일

이 력 서

성명: 박노철 (Samuel N. C. Park)
 생년월일:
 외국인거소등록증:
 학력:
 1991 캐나다 York University B. A. 졸업 (철학과)
 1994 미국 Philadelphia 소재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M. Div. 졸업
 1996 사당동 총신신대원 M. Div. 편입 89회 졸업
 1999 사당동 총신대학교 Th. M. 졸업 (한국교회사)
 2009 미국 Chicago 소재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에서 Doctor of Ministry 과정 중

▶ 동일한 날 박노철 목사가 교회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사당동 총신신대원 M. Div. 편입 89회 졸업』이라고 적었으나 조사결과 학위를 인정 못받는 연구과정이었음. 자신의 학력에 대한 중대한 허위사실 기재임을 알 수 있다.

과정이 아닌 단순히 같은 대학의 연구과정만 마쳤고 따라서 **총신대학원의 정식 학위과정 (M.Div)에 편입하거나 졸업자가 아님에도 이력서에 M. Div 편입 및 졸업이라고 기재**하였다.

2. 증거의 요지

- 가. 총회헌법(2010년 5월 당시) 정치편 제31조
- 나. 2011년 7월 29일자, 총회목사고시 합격자 명단(전체)
- 다. 서울교회 홈페이지(2011. 8. 7. 순례자, 박노철 목사 총회목사고시 합격)
- 라. 서울교회에서 강남노회 제49회 정기회(2011.11.8.) 개최(교회주보)
- 마. 2010년 총회목사고시공고문
- 바. 총회재판국의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동서울노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박노철 목사의 이력서 및 총신대학원 졸업증명서
- 사. 원고와 피고의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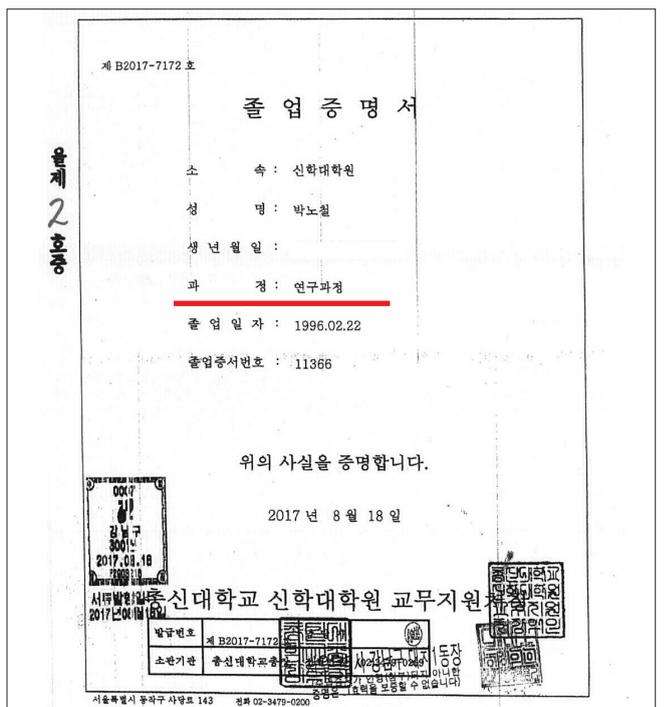
3. 총회재판국의 판단

가. 박노철 목사가 본 교단 목사 고시에 응시한 2010.5. 당시의 응시자격에 관한 총회 헌법 정치 제31조 제1항, **헌법시행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로서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1년 이상 본 총회 직영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총회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석상에서 서약을 한 자는 본 총회신하 소속교회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교파 목사가 소속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으면 그 노회에 가입을 청원하고 가입이 허락되면 추천을 받아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신대원)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노철 목사는 2009.9. 위 청목과정에 입학하여 1년의 이수기간이 완전히 종료되지도 않은 2010.5. 실시된 목사고시에 단순히 이수예정확인서만 제출하여** 설교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합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따라서 **박노철 목사에 대한 목사고시 합격처분은 적법한 응시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나. 또한 총회 헌법 정치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 교단 소속목사가 본 교단의 목사로 청빙 받기 위하여는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청빙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헌법시행규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박노철 목사의 경우에는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에 해당하는 합동 측 직영“총신대학원 졸업자”이어야 한다. 그런데 **박노철 목사가 제출한 총신대학원 졸업증명서 기재에 의하면 박노철 목사는 합동 측 총신대학원 정식 학위과정(M.Div) 졸업이 아닌 단순히 연구과정만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역시 위 청빙자격을 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또 연구과정만 이수하면 **총신대학원의 정식 학위과정(M.Div)에 편입하여 졸업한 자가 아님에도 서울교회에 청빙당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총신대학원 M.Div 편입 및 졸업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자신의 학력에 관한 중대한 허위표기**에 해당하여 이 역시 청빙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라. 그뿐 아니라 본 교단에서 타 교단 소속목사의 청빙을 위하여는 헌법 정치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이어야 한다. 그런데 당 재판국의 합동 측 동서울노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본인 이력서 기재에 의하면 박노철 목사는 1998.10.13. 합동 측 동서울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중현교회 부목사로 시무하다



▶ 총신대학교(합동측) 교무처에서 받은 박노철 목사 졸업증명서 : 연구과정임을 알 수 있다.

총신대학교 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교육목적) 본 대학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개혁주의적 기독교 신앙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학문의 이론과 그 실천방법을 연구, 교수함과 동시에 신앙인격의 도야를 통하여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에 봉사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학사과정은 학사학위를, 석사과정은 석사학위를, 박사과정은 박사학위를 각각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② 연구과정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가 대학원 수업에 출석하여 연구하는 과정으로서 학위는 수여하지 아니하는 과정을 말한다.
 ③ 시간제 등록생이라 함은 입학자격을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의하신 신학박사를 소지하신 분들이 단기코스 M.Div. 학위를 취득하는 코스는 없습니다. 아마도 과거에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이 교단법에 따라 총신에서 1년정도의 교단신학을 이수한 경우를 두고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학위는 주여지지 아니함/ 총신 신대원에는 편입제도가 없습니다.)

▶ 총신대학교(합동측) 학칙 제 2 조 2항에 의하면 연구과정은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과정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 또한 총신대학교 홈페이지 입학 Q&A에 의하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 Div. 과정에는 편입제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박노철 목사는 편입이라는 허위사실을 다시 기재한 것이다.

가 1999.9. 시무사면 이후 무임목사 위치로 등재되고 이후 소속노회에 자선에 대한 어떠한 상황도 보거나 소명이 없어 2005.4. 별명부에 등재되었으며 2017.4. 노회 이전 타교단으로의 이적이 확인되어 별명부 명단의 오류정리 차원에서 삭제됨으로써 행정상 제명처리가 되었으며 합동 측 교단에서는 이 종교적이 원천적으로 허락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박노철 목사는 위 총현교회 시무사면 이후 침례교단 소속의 분당지구총교회를 거쳐 2005.경부터 구리지구총교회를 개척하여 담임목사로 시무함으로써 적어도 그때부터는 이종교적이 허용되지 않는 합동교단 헌법에 따라 해당교단의 목사직을 상실하였고 그 상태에서 2009.6. 본 교단으로 청빙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청빙당시 해당교단에 속한 목사이어야 한다는 청빙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청빙허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점에서도 위 청빙허락은 무효라 할 것이다.

다. 제3자 소송참가인 박노철 목사의 변호인은 이 소송의 원고들이 현재 서울강남노회의 총대회원이 아니므로 당사자격이 없고 또 원고들이 위 결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해처리 회원이라는 것은 소송의 제기요 조건이지 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조건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위 결의당시 참여한 원고 노문환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그때부터 위와 같은 결의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헌법 및 규정의 적용

총회헌법(2010년 5월 당시) 정치편 제31조, 헌법시행규정 제23조, 헌법 정치편 제29조, 권징편 제164조.

5. 결론

그렇다면 박노철 목사의 목사고시 합격은 무효이고 헌법상 필요한 타교단 목사의 청빙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청빙을 받은 것이므로 2011.11.8.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 제49회 정기회에서 이루어진 박노철 목사에 대한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허락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나아가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임직 또한 무효로서 그 위임목사의 지위가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 권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위와 같이 판결한다.

2017년 9월 1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박노철 목사가 고소한 안식년규정은 유효하다

- 박노철 목사는 그에 따라 안식년을 시행하고 재시무투표절차를 통하여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제101회 총회 주제: "다시 거룩한 교회로" (요사서 1:17, 레위기 19:2)

행정지원본부 03128 서울시 용문구 대학로3길 29, 302호(연희동, 한국교도100주년기념관)
전화: (02)741-4350~4(5211) 팩스: (02)6088-2962 담당: 홍민영 상장

문서번호: 예정총제 제101-528호
시행일: 2017. 9. 14.
수신: 노문환 장로
참조: []
제목: 판결 통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본 재판국은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최자순 장로가 서울교회 당회장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 무효 확인의 소)"(사건번호: 제101-26호)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제3편(권징) 제33조(일반소송절차) 제34조(판결의 확정) 제35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제36조(재판송달의 기일)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판결 통보합니다.

첨부: 총회 재판국 판결문 1점.

재판국
국장 서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판결

사건번호: 예정총재판국 사건 제101-26호

사건명: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최자순 장로가 서울교회 당회장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한 "상고(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 무효 확인의 소)"

원고(상고인): 1. 최자순, 성별: 남 직분: 장로
2. 최양진, 성별: 남 직분: 장로
3. 이동만, 성별: 남 직분: 장로
4. 김금준, 성별: 남 직분: 장로

원고(상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홍종각 성별: 남 직분: 장로

피고(대상고인): 서울교회 당회장 박노철 성별: 남 직분: 장로

제3자 소송참가인: 노문환 외 16인(서울교회 사무장) 노문환, 성별: 남 직분: 장로

행정장송의 종류: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 무효 확인 소송
원심판결: 서울강남노회재판국 2017. 1. 16. 선고 제58-137호 사건 판결
변론종결일: 2017년 9월 11일
판결선고일: 2017년 9월 11일

주 문

1. 원고(상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및 상고취지

청구취지: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상고취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규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판결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교회는 1998년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을 제정하여 목사의 장로는 6년을 시무하면 1년의 안식년을 갖게 하고, 안식년이 끝난년 당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다시 시무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총동의회에서 교인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다시 시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은 2000년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이후 계속 시행되어 왔으며, 2008년 9월 17일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2015년까지 평안하게 시행되어 왔다.
나. 박노철 목사도 그 규정을 잘 알고 2009년 부임하였으며, 2011년 1월 담임목사가 된 이후 목회 5년간 위 안식년규정에 따라 장로들의 안식년 시행과 당회에서의 재시무투표를 직접 주재하였다. 또한 신도들에게 위 안식년규정은 성경의 명령이므로 순종하여야 하며, 서울교회의 자부심이라고 선포하였다. 나아가 자신도 이를 준수하겠다고 신도들 앞에서 공약하고 당회록에도 기록된 바 있다.

2. 증거의 요지
가.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 규정
나. 서울교회 소식지(순례자)기사
다. 서울교회 2000.10.8.가 공동의회 회의록
라. 서울교회에서 박노철 목사의 장로들에게 대한 안식년시행 주재사건
마. 서울교회 2015.12.9.가 당회록
바. 원고와 피고 제3자 소송참가인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2017.11.11.부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뿐이며,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국가법원에서 위 안식년규정이 무효라는 확정적 판단이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의 규정이 유효성을 비롯한 교회문제에 대하여 국가법원의 판단과 교단 총회의 판단은 성격이 다른 점, 예사판, 사법과 이법, 추구는 목회, 판단기준 등 다양한 차이를 인하여 반드시 동일할 것이 아니므로, 헌법위헌에서 위 안식년규정을 유효하다고 유권해석 한 것이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서울교회 안식년규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제소기간대로 부적법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인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의 판결 또한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를 따르는 상고인(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또한 위 안식년규정은 총회헌법과 헌법위헌결의의 유권해석, 그리고 총회헌법의 시행령에 따라 개정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박노철 목사는 그에 따라 안식년을 시행하고 재시무투표절차를 통하여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원심인 서울강남노회재판국의 판결이유 중 이와 배치되는 부분은 이와 같이 변경한다.)

위와 같이 판결한다.

2017년 9월 1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행정장송총재장

국원

3. 본 재판국의 판단
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소송으로 각하사유에 해당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안식년규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장송인데, 총회헌법상 지교회규정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 안식년규정을 제정할 결의나 행정행위의 무효확인소송으로 보더라도(원고들은 소장에서 '행정행위가 있는 날'을 위 안식년규정이 마지막 으로 개정된 2008년 9월 17일이라고 기재하였음) 결의나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2년, 결의나 행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그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헌법 권징 제157조 제3항, 제164조 제2항). 그런데 위 안식년규정은 1998년 제정되고 2008년 9월 17일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는데,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년에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제소기간을 지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인 서울강남노회재판국은 2017. 1. 16.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소기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소장에서 위 안식년규정을 2015년 12월에 알았다고 주장하고 상고심에서는 2016년 9월을 전후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들의 서울교회 등록과 출석일은 교회등록초기이고(최자순 1991년, 최양진 1992년, 이동만 1997년, 김금준 1991년), 위 안식년규정은 그 이후 1998년에 제정되고 2000년에 공동의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계속 시행하여 그 내용이 교회소식지에 게재되어 왔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 안식년규정에 대하여 그 당시에 이미 알았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5년의 제소기간은 원고들의 인식여부나 무관한 기일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들은, 개교회의 규정 내용이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이 있고 불법행위의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분장이 극심하고 원혼과 있다면 그 규정 자체의 무효를 활용든지, 아니면 당회 규정의 외관을 성립시킬 결의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제소기간의 제정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총회헌법은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모든 행정장송에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헌법 권징 제157조 제3항, 제3항, 제163조 제1항, 제164조 제2항)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다. 서울교회 안식년규정의 유효성
1) 총회헌법 정치편 제36조, 제46조, 헌법시행규정 제25조는 목사, 장로의 휴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1995년 9월 제80회 총회)는 목사 등 교역자의 안식년제도에 대한 청원을 허락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 내용은 시무 후 7년제를 안식년으로 정하여 모든 교역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교역자는 3개월 이상 반드시 연휴를 받도록 하

며 실시방법(행정제)은 지교회에 위임하였다(총회 제80회회 회의록 참조). 서울교회는 그에 따라 1998년 위 안식년규정을 제정하여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시행하여 왔다.
3) 총회헌법 정치편 제2조는 교회의 자유에 관하여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이외 다른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생애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총회헌법위원회는 2017. 1. 11. 예정총 제101-450호를 서울교회의 안식년 규정 중 안식년 부분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재시무투표 부분의 대대적으로 박노철 목사가 그 규정을 알고 부임하였고 교인들에게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직접 5년간 장로들의 안식년시행과 재시무투표를 집행하여 왔으므로 목회자의 양심과 글란의 원칙 등에 따라 자신은 위 규정을 준수하여 이행할지의 문제가 되어야 하고 위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개정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5) 나아가 총회장과 총회헌법위원회는 서울강남노회가 위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시행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13. 임원회결의(예정총 제101-1049호)로 서울강남노회당회에게 '총회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에 의거 위 총회 헌법위원회의 총회(예정총 제101-450호)를 헌법결의에 따라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6)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서울교회의 목사, 장로 안식년규정은 여전히 유효하고 준수를 약속한 고 박노철 목사는 개정되기 전까지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4. 헌법 및 규정의 적용
총회헌법 권징편 제148조, 제157조 제3항, 제164조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59조.

5. 원고들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위 안식년규정이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헌법시행규정은 '헌법 권징 제3조 1항, 제6조 2항에 의거'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그 조항들은 교인들에 관하여 있어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선언한 것일 뿐으로, 서울교회의 위 안식년규정, 교인들이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제정하고 이를 해당 목사나 장로들의 자위에 의해 시행하는 경우는 권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정을 집행하게 준수하는 것이므로 위 헌법시행규정에 반도시 배척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나. 또한 원고들은 제3자 소송참가인들이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시행을 전제로 한 직무금지 처분소송에서, 국가 법원이 위 안식년규정을 무효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위 안식년규정이 정관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규정으로 제정된 효력만으로 위 헌법시행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효력이 없고 또 박노철 목사가 목사고시에 불합리한 사유로 1년간 위임직을 갖지 못한 채 사실상 담임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안식년 시행이

2017.11.11.부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뿐이며,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국가법원에서 위 안식년규정이 무효라는 확정적 판단이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의 규정이 유효성을 비롯한 교회문제에 대하여 국가법원의 판단과 교단 총회의 판단은 성격이 다른 점, 예사판, 사법과 이법, 추구는 목회, 판단기준 등 다양한 차이를 인하여 반드시 동일할 것이 아니므로, 헌법위헌에서 위 안식년규정을 유효하다고 유권해석 한 것이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서울교회 안식년규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제소기간대로 부적법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인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의 판결 또한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를 따르는 상고인(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또한 위 안식년규정은 총회헌법과 헌법위헌결의의 유권해석, 그리고 총회헌법의 시행령에 따라 개정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박노철 목사는 그에 따라 안식년을 시행하고 재시무투표절차를 통하여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원심인 서울강남노회재판국의 판결이유 중 이와 배치되는 부분은 이와 같이 변경한다.)

위와 같이 판결한다.

2017년 9월 1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행정장송총재장

국원

판 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교회는 1998년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을 제정하여 목사와 장로는 6년을 시무하면 1년의 안식년을 갖게 하고, 안식년이 끝나면 당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다시 시무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의회에서 교인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다시 시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은 2000년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직후부터 줄곧 시행하여 왔으며, 2008년 9월 17일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2015년까지 평온하게 시행되어 왔다.

나. 박노철 목사가 그 규정을 잘 알고 2009년 부임하였으며, 2011년 1월 담임목사가 된 이후 목회 5년간 위 안식년규정에 따라 장로들의 안식년 시행과 당회에서의 재시무투표를 직접 주재하였다. 또한 성도들에게 위 안식년규정은 성령의 명령이므로 순종하여야 하며, 서울교회의 자부심이라고 선포하였다. 나아가 자신도 이를 준수하겠다고 성도들 앞에서 공약하고 당회록에도 기록된 바 있다.

2. 증거의 요지

가.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 규정

나. 서울교회 소식지(순례자)기사

다. 서울교회 2000.10.8.자 공동의회 회의록

라. 서울교회에서 박노철 목사의 장로들에 대한 안식년시행 주재사진

마. 서울교회 2015.12.9.자 당회록

바. 원고와 피고 및 제3자 소송참가인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3. 본 재판국의 판단

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소송으로 각하사유에 해당함**
원고들의 청구는 위 안식년규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쟁송인데, 총회헌법상 지교회규정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 안식년규정을 제정한 결의나 행정행위의 무효 확인소송으로 보더라도(원고들은 소장에서 '행정행위가 있는 날'을 위 안식년규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2008년 9월 17일이라고 기재하였음) 결의나 행정행위가 있음은 안 날로부터 2년, 결의나 행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그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헌법 권징 제157조 제3항, 제164조 제2항). 그런데 위 안식년규정은 1998년 제정되고 2008년 9월 17일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으며,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년에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제소기간을 지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인 서울강남노회재판국은 2017. 1. 16.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소기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소장에서는 위 안식년규정을 2015년 12월에 알았다고 주장하고 상고심에서는 2016년 9월을 전후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들의 서울교회 등록과 출석일은 교회설립초기이고(최차순 1991년, 최양진 1992년, 이동만 1997년, 김금준 1991년), 위 안식년규정은 그 이

후 1998년에 제정되고 2000년에 공동의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계속 시행하여 그 내용이 교회소식에 게재되어 왔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 안식년규정에 대하여 그 당시에 이미 알았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5년의 제소기간은 원고들의 인식여부와 무관한 기간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들은, 개교회의 규정 내용에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이 있고 분쟁발단의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분쟁이 극심하고 현존하고 있다면 그 규정 자체의 무효를 허용하든지, 아니면 당해 규정의 외관을 성립시킨 결의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총회헌법은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모든 행정쟁송에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헌법 권징 제157조 제2항, 제3항, 제163조 제1항, 제164조 제2항)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다. 서울교회 안식년규정의 유효성

1) 총회헌법 정치편 제36조, 제46조, 헌법시행규정 제25조에 목사, 장로의 휴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1995년 9월 제80회 총회)는 목사 등 교역자의 안식년제도에 대한 청원을 허락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 내용은 시무 후 7년째를 안식년으로 정하여 모든 교역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교역자는 3개월 이상 반드시 연수를 받도록 하며 실시방법(시행세칙)은 지교회에 위임하였다(총회 제80회기 회의록 참조). **서울교회는 그에 따라 1998년 위 안식년규정을 제정하여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시행하여 왔다.**

3) 총회헌법 정치편 제2조는 교회의 자유에 관하여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총회헌법위원회는 2017. 1. 11. 예장총 제101-450호로 서울교회의 안식년 규정 중 안식년 부분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재시무투표 부분에 대해서도 **박노철 목사가 그 규정을 알고 부임하였고 교인들에게 준수약속을 하였으며 직접 5년간 장로들의 안식년시행과 재시무투표를 집행하여 왔으므로 목회자의 양심과 금반언의 원칙 등에 따라 자신은 위 규정을 준수하여 언행일치의 본이 되어야 하고 위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개정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5) 나아가 총회장과 총회임원회는 서울강남노회가 위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시행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13. 임원회결의(예장총 제101-1049호)로 서울강남노회자에게 "총회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에 의거 위 총회 헌법해석 통보(예장총 제101-450호)를 헌법절차에 따라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6)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서울교회의 목사, 장로 안식년규정은 여전히 유효하고 준수를 약속한 피고 박노철 목사는 개정되기 전까지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4.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총회헌법 권징편 제148조, 제157조 제3항, 제164조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89조.

5. 원고들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위 안식년규정이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헌법시행규정은 '헌법 권징 제4조 1항, 제6조 2항에 의거'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그 조항들은 교인들이 권징에 있어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선언한 것일 뿐으로, 서울교회의 위 안식년규정처럼, 교인들이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제정하고 이를 해당 목사나 장로들의 자의에 의해 시행하는 경우는 권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정을 적법하게 준수하는 것이므로 위 헌법시행규정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나. 또한 원고들은 제3자 소송참가인들이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시행을 전제로 한 직무정지 가처분소송에서, 국가 법원이 위 안식년규정을 무효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위 안식년규정이 정관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규정으로 제정된 효력만으로 위 헌법시행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효력까지 있는지 의심스럽고 또 박노철 목사가 목사 고시에 불합격 한 사유로 1년간 위임식을 갖지 못한 채 사실상 담임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안식년 시행이 2017.1.1.부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뿐이며,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국가법원에서 위 안식년규정이 무효라는 확정적 판단이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지교회 규정의 유효성을 비롯한 교회 문제에 대하여 국가법원의 판단과 교단총회의 판단은 성격적 가치관, 역사관, 사명관 이념, 추구하는 목표, 판단기준 등 다양한 차이로 인하여 반드시 동일할 것이 아니므로, 헌법위원회에서 위 안식년규정을 유효하다고 유권해석 한 것이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서울교회 안식년규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제소기간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인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의 판결 또한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한 바, 이를 다투는 상고인(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또한 위 안식년규정은 **총회헌법과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 그리고 총회임원회의 시행권고에 따라 개정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박노철 목사는 그에 따라 안식년을 시행하고 재시무투표절차를 통하여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원심인 서울강남노회재판국의 판결이유 중 이와 배치되는 부분은 이와 같이 변경한다.)

위와 같이 판결한다.

2017년 9월 1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무효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제101회 총회 주제: "다시 기쁨의 교회를" (요한 1: 17, 레위기 19: 2)

행정지원본부
03128 서울구 용문구 대원로3길 29, 309호(민통선,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전화: (02)741-4350~435211 팩스: (02)6008-2982 담당: 총회에 실람

문서번호: 예장총회 제101-529호
시행일: 2017. 9. 14.
수신: 사문서 경로
참조: 판결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본 재판국은 서울교회 노련환 장로 외 20인이 서울강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로선거청원 허락결의 및 공동의회소집지시 행정행위 무효확인 등의 소송)"(사건번호 : 제 101-53호)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제33조(헌법) 제33조(일반소송절차) 제34조(판결의 확정) 제35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제36조(재판소송의 기입)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판결 통보합니다.

첨 부 : 총회 재판국 판결문 끝.

재판국

국장 서기

주 문

1.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가 2017년 4월 4일 모교총회에서 개최된 제60회 정기노회(노회장 피고 김예식 목사)에서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가 제출한 서울교회 정교원천 청원을 허락한 결의 및 서울강남노회장 김예식 목사가 2017년 4월 14일 서울교회에 정교원천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한 행위를 각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청구취지 임

판결이유

1. 소송대상여부 및 당사자적격여부 판단
 - 가. 소송대상여부 판단
 - 제3차 소송참가인(미교보조참가인)의 변호인은 공동의회소집지시 행위는 서울강남노회의 결의를 피고인 통보한 것이므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명의로 통보된 지시는 노회헌법의 결의를 기초로 피고가 지리회장으로 서 정식 행정처리를 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들의 당사자적격여부 판단
 - 제3차 소송참가인의 변호인은 원고들 중 4명의 목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17명 장로들은 총회원천이 아니고 또 부목사들도 2016.11. 가을노회에서 연임청원이 부결(대류)되어 현재 무임목사로서 역시 당해 지리회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행위의 무효를 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리회원이냐 한다는 요건이 없으므로 위 공동의회 소집지시 행정행위를 위 주장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 또한 위 정교원천허락결의에 있어서도 위 4명의 목사는 당시 박노철 목사 추으로부터 권징청원이 청구되었다고 하여 향후 권징청안과 피고의 정교원천청원을 하자는 의미에서 잠정적으로 승인이 부결이 아닌 보류처리된 것에 불과하고, 당시 피고를 비롯한 서울강남노회 임원들도 이들의 지리회 목사로서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설명까지 하여 노회원천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것이

4. 강제재판국의 판단
 - 원고들은 위 정교원천청원에 대하여 서울강남노회가 한 정교원천허락결의 및 서울교회에 정교원천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한 행위를 각각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나누어 판단한다.

- 가. 지교회 당회의 결의 없는 정교원천허락 청원에 대한 성회인 노회의 허락결의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 1) 장로교회는 목사와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를 지리하는 데에 의해서 따라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장로의 선출과 임명은 반드시 선출주체인 교인들의 총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대의기관 구성원내에 대한 선출이 때문에 그 필요성 여부와 인연, 시기, 절차 등에 관하여 교인들의 대표기관인 지교회 당회의 결의가 반드시 선행하도록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당회를 통한 대의제가 장로교회의 핵심적 특징이고, 당회는 노회는 독립되어 지교회 소유의 의사로 결정하는 유일한 지리기관이므로 결국 장로의 선출은 지교회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만일 노회가 상하라는 지위를 앞세워 지교회와 장로 선출에 관한 당회결의도 없는 정황을 대신 하면서도 노회는 지교회와 고유한 선출권과 지교회 내부사정 관련도 없는 노회가 집행하게 되는 것으로 명백히 헌법상 교회의 자유 규정(헌법 정칙 제23조)에도 배치된다 할 것이다.
 - 2) 피고는 서울교회 다수측 장로들이 노회의 지시를 위반하고 박노철 목사를 담임목사로 인정하지 않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는 당회개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울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당회를 개최하라고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교원천을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과 제출증거에 의하면 박노철 목사가 2016년 수차례에 걸쳐 지교회 당회의 당회소집요구에도 불응하고 임원들도 노회인 자신에게 불리한 안전장치가 표시된 청원을 거부하는 등 당회를 방해하고 원고장로 및 신도들 20여 명을 위한 당회소집요구에도 계속불응 하다가 원고장로들이 2017년 1월에 들어와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대의당회장을 세워 지교회 임무를 처리하자 그때야야 형식상의 당회를 단 2회 소집한 이후 곧바로 서울강남노회 정교원천을 위한 청원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본다면 서울강남노회가 박노철 목사가 당회라도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행위는 설득력이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판 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101-53호

사 건 명 : 서울교회 노련환 장로 외 20인이 서울강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로선거청원 허락결의 및 공동의회소집지시 행정행위 무효확인 등의 소송)"

원 고 : 1. 노련환, 성별: 남 직분: 장로

2. 서문식, 성별: 남 직분: 장로

3. 이관규, 성별: 남 직분: 장로

4. 임상진, 성별: 남 직분: 장로

5. 조경식, 성별: 남 직분: 장로

6. 하인선, 성별: 남 직분: 장로

7. 오영환, 성별: 남 직분: 장로

8. 양춘경, 성별: 남 직분: 장로

9. 최영환, 성별: 남 직분: 장로

10. 이재홍, 성별: 남 직분: 장로

11. 이강진, 성별: 남 직분: 장로

12. 오지철, 성별: 남 직분: 장로

- 1 -

며, 위 변호인이 제출한 을제1호증 제14번 목회회원 참석자 명단이 보더라도 위 4명의 목사들을 여전히 회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 가. 서울교회의 분쟁의 경위요지
 - 1) 서울교회는 이종훈 목사가 1991.11. 초대목사로 사임한 후 2010. 10. 은퇴하였고, 박노철 목사가 그 후임으로 2009. 8. 부임하여 동시목회를 시작한 후 2011.1.1.부터 1년간 설교와 행정 등 목회직분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담임목사로 사임한 후 2011.11. 위임직을 갖고 정식 위임목사로 재직하게 되었다.
 - 2)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에 부임 이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 소속 총회교회에서 부목사로 임명된 후 6개월 사임하다가 사임한 후 기독교한국침례회 교단의 분당지구총교회장을 거쳐 독립목회 형태의 구미 지구총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사역하는 등 장로교나 장로회 당회소집의 기한이 취약하여 서울교회 부임 후 설교와 정교원천청원, 회계의 정상성 등에서 많은 갈등이 있어 왔다.
 - 3) 한편 서울교회는 1998년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을 제정하여 목사와 장로는 6년을 사임하면 1년의 안식년을 갖게 하고, 안식년이 끝나면 당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다시 사임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의회에서 교인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선임을 받아야만 다시 사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계속 시행하여 온바, 박노철 목사는 그 규정을 알고 부임하여 5년간 장로들의 안식년제와 재사임투표를 진행하였고 또 자신도 규정에 따라 2017년 10월에 재선임을 받겠다고 당회에서 직접 의사 표명하여 당회록에 기록되어 있다.
 - 4) 박노철 목사는 교인들의 여론이 자신에 대하여 점점 더 부정적이 되어 안식년 후 재선임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위 안식년 규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아울러 원로목사의 표결투표를 하고 그 지지자들은 목장장로의 교회 재정비리 주장을 하여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었다. 2017.1.11. 총회헌법위원회는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의 총회헌법에 위배되는"다는 유권해석과 함께 "박노철 목사가 교회 안식년의 공적인 약속에 따라 위 규정을 준수하는 유권투표를 받아야 한다"고 유권해석하여 통보하였다. 이에 2017.1.14. 서울교회 당회원 2/3이상은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 휴가가 같은 해 1. 1.부터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고 우선 노회로부터 임시당회장이 파송될 때까지 3개월 간 당회원의 할파로 이종훈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장부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소수 서울강남노회에 보고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을 청원하였으나 노회가 파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위 대리당회장을 재직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5) 서울교회는 2017.1.15. 이후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제명을 요구하면서 설교와 목회를 정지하자 박노철 목사와 그를 따르는 교인들은 예배당 입구 계단에서 박노철 목사의 함께

- 3) 또 인정된 기초사실 같이 총회 헌법위원회는 헌법해석을 통하여 교회가 분쟁 시에는 장로 중임을 청원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해석하였고, 총회장과 임원들도 서울강남노회에 그 유권해석을 헌법해석과 따라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에는 헌법 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총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것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헌법해석사례를 보면 '헌법위원회가 헌법해석의 전권을 갖고 있으며 총회재판국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총회 제92회기 헌법해석사례 제62년 참조).

- 나. 장로선출을 관하여 지교회 당회의 결의 없이 노회가 상회로서 한 공동의회 소집지시의 위법여부에 관하여
 - 피고는 위 헌법 정칙 제90조 제3항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①상회의 지사가 있을 때, 상회의 지사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당회결의 없이 노회의 지시만으로도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교단 헌법규정상 장로 선출과 임직은 지교회 당회의 전수 권한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노회는 상회라 할지라도 지교회 당회의 선출결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아닌 정교원천을 전권 지교회 공동의회 안건으로 지정하여 소집지시 할 수는 없으므로 당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위 서울교회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지시 또한 헌법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 나아가 위와 같이 서울교회 정교원천청원 허락결의 및 피고의 공동의회 소집지시 행정행위는 각각 무효이므로, 그에 바탕이 박노철 목사가 같은해 4.30.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15명의 서울교회 장로들을 선출한 결의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5. 헌법 없는 규정의 적용

13. 송인권, 성별: 남 직분: 장로
14. 안인호, 성별: 남 직분: 장로
15. 최영환, 성별: 남 직분: 장로
16. 차도훈, 성별: 남 직분: 장로
17. 홍일성, 성별: 남 직분: 장로
18. 서명철, 성별: 남 직분: 부목사
19. 장석남, 성별: 남 직분: 부목사
20. 조원영, 성별: 남 직분: 부목사
21. 서준권, 성별: 남 직분: 부목사

원고선정대표자: 노련환, 서문식, 임상진

피 고 : 서울강남노회장 김예식, 성별: 여 직분: 목사

제3차 소송참가인(미교보조참가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당회장 박노철 성별: 남 직분: 목사

제3차 소송참가인의 변호인: 변호사 홍종욱, 성별: 남 직분: 장로

행정쟁송의 종류 : 결의무효확인 및 행정행위무효확인 등의 소송
변본종결일 : 2017년 9월 11일
판결선고일 : 2017년 9월 11일

이해를 드리고, 박노철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매우 다른 목회자를 초청하여 교회당 내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사실상 두 개의 예배당으로 분리된 분당상태에 있다.

- 나. 서울강남노회의 장로중원허락결의 및 공동의회 소집지시
 - 1) 박노철 목사는 2017.2.28. 정기노회를 앞두고 열린 명동시찰회에 당회결의도 거치지 않은 정교원천 안건을 제출하였고 당회결의 없는 장로중원 청원안건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어있음에도 2017.4.4. 정기노회 당일 다시 제출되어 서울강남노회가 이를 받아들여 허락하였다.
 - 2) 박노철 목사는 위 허락결의를 근거로 서울교회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지시를 청원하였고 피고는 2017.4.14. 서울교회에 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박노철 목사는 같은날 30. 서울교회 인근 카이로스 빌딩 4층에서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박노철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만 모여 지리 교인들 중에서 15명의 장로들을 선출하였다.

- 다. 총회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총회장의 시행권고
 - 1) 총회 헌법위원회는 박노철 목사가 당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정교원천청원을 서울강남노회에 제출하여 허락한 결의가 유효한지와 한해와 같이 서울교회에 분당중인 상황에서 장로중원을 청원한 것이 허용되는지를 질문 받고, 2017. 6. 8.(예장총회 101-947호)로 "장로의 선출(헌법 제62조(장로) 제41조(장로의 선출)을 위한 상회(노회)의 지시행위는 위법하며, 제98회기 총회헌법위원회의 해석사례 124번에 따라 교회가 분당시에는 장로중원을 청원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통보하였다.
 - 2) 총회장과 총회헌법위원회는 2017. 7. 13. 총회헌법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서울강남노회에 헌법위원회의 위 2017.6.8차 헌법해석에 대하여 총회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에 의거하여 헌법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통지문(예장총회 제101-1049호)을 발송하였다.

3. 증거의 요지
 - 가. 갑제1호증 노회장의 공동의회 소집 지시 문본
 - 나. 갑제2호증 정기노회 소집공고문
 - 다. 갑제3호증 노문본, 서문식 장로의 사찰확인서
 - 라. 갑제4호증 헌법해석통보(2017.6.8. 예장총회 제101-1049호)
 - 마. 갑제8호증 위임목사 청빙승인결의 무효 소집
 - 바. 갑제9호증 총회재판국 권징사건 피의사실 요지

총회헌법 정칙 제68조, 제43조, 제90조 제3항, 헌법시행규정 제36조,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2017.6.8. 예장총회 제101-947호), 총회 제98회기 총회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사례 124번, 총회 제92회기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사례 제62년, 헌법 권징명 제148호.

6. 결론
 - 결국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가 2017.4.4. 제60회 정기노회에서 서울교회 정교원천청원에 대하여 한 허락결의 및 피고의 2017.4.14. 서울교회에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한 행위는 모두 총대하고 명백한 하자기 있어 무효이다. 그렇다면 헌법 권징 제164조 제1항,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판결한다.

2017년 9월 1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행정쟁송재판장

국 원

판 결 이 유

1. 소송대상여부 및 당사자자격여부 판단

가. 소송대상여부 판단

제3자 소송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의 변호인은 공동의회소집지시 행위는 서울강남노회의 결의를 피고가 단순히 통보한 것이므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명의로 통보된 지시는 노회임원회의 결의를 기초로 피고가 처리회장으로서 정식 행정지시를 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당사자자격여부 판단

제3자 소송참가인의 변호인은 원고들 중 4명의 목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17명 장로들은 총대회원이 아니고 또 **부목사들도 2016.11. 가을노회에서 연임청원이 부결(보류)되어 현재 무임목사이므로 역시 당해 처리회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행위의 무효를 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리회원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으므로 위 공동의회 소집지시 행정행위에는 위 주장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 또한 위 장로증원허락결의에 있어서도 위 4명의 목사는 당시 박노철 목사 측으로부터 권징재판이 청구되었다고 하여 향후 권징재판결과에 따라 정식 행정처리를 하자는 의미에서 잠정적으로 승인이나 부결이 아닌 보류처리된 것에 불과하고, 당시 피고를 비롯한 서울강남노회 임원들도 이들의 지교회 목사로서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설명까지 하여 노회원들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것이며, 위 **변호인이 제출한 을제1호증 제114면 목사회원 참석자 명단에 보더라도 위 4명의 목사들을 여전히 회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가. 서울교회 분쟁의 경과요지

1) 서울교회는 이종윤 목사가 1991.11. 초대목사로 시무한 후 2010.말 은퇴하였고, 박노철 목사가 그 후임으로 2009. 부임하여 동사무회를 시작한 후 2011.1.1.부터 1년간 설교와 행정 등 목회전반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담임목사로 사역한 후 2011.11. 위 임식을 갖고 정식 위임목사로 재직하게 되었다.
 2)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에 부임 이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 소속 총현교회에서 부목사로 임직한 후 6개월 시무하다가 사임한 후 기독교한국침례회 교단의 분당지구총교회를 거쳐 독립교회 형태의 구리 지구총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사역하는 등 **장로교나 장로교 당회운영의 기반이 취약하여 서울교회 부임 후 설교와 장로교정체성, 목회의 성실성 등에서 많은 갈등이 있어 왔다.**
 3) 한편 서울교회는 1998년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을 제정하여 목사와 장로는 6년을 시무하면 1년의 안식년을 갖게 하고, 안식년이 끝나면 당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만 다시 시무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의회에서 교인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신임을 받아야만 다시 시무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계속 시행하여 온 바, **박노철 목사는 그 규정을 알고 부임하여 5년간 장로들의 안식년시행과 재시무투표를 진행하였고 또 자신도 규정에 따라 2017년 10월에 재신임을 받겠다고 당회에서 직접 의사 표명하여 당회록에 기록되어 있다.**

4) 박노철 목사는 교인들의 여론이 자신에 대하여 점점 더 부정적이 되어 안식년 후 재신임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위 안식년 규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아울러 원로목사의 표절주장을 하고 그 지지자들은 특정장로의 교회 재정비리 주장을 하여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었다. 2017.1.11. 총회헌법위원회는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이 총회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과 함께 “박노철 목사가 교회 앞에서의 공적인 약속에 따라 위 규정을 준수하고 재신임투표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여 통보하였다. 이에 2017.1.14. 서울교회 당회원 2/3 이상은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 휴무가 같은 해 1. 1.부터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고 우선 노회로부터 임시당회장이 파송될 때까지 3개월 간 당회원의 합의로 이종윤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청빙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3개월여 경과되는 시점에 소속 서울강남노회에 보고하고 임시당회장 파송을 청원하였으나 노회가 파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위 대리당회장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5) 서울교회는 2017.1.15. 이후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시행을 요구하면서 설교와 목회를 정지하자 박노철 목사와 그를 따르는 교인들은 예배당 입구 계단에서 박노철 목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박노철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매주 다른 목회자를 초청하여 교회당 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교회가 사실상 두 개의 예배집단으로 분리된 분쟁상태에 있다.**

나. 서울강남노회의 장로증원허락결의 및 공동의회 소집지시

1) 박노철 목사는 2017.2.28. 정기노회를 앞두고 열린 영동시찰회에 당회결의도 거치지 않은 장로증원 안건을 제출하였고 당회결의 없는 장로증원 청원안건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음에도 2017.4.4. 정기노회 당일 다시 제출되어 서울강남노회가 이를 받아들여 허락하였다.
 2) 박노철 목사는 위 허락결의를 근거로 서울교회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지시를 청원하였고 피고는 2017.4.14. 서울교회에 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박노철 목사는 같은 달 30. 서울교회 인근 카이로스 빌딩 4층에서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박노철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만 모여 지지 교인들 중에서 15명의 장로를 선출하였다.**

다. 총회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총회장의 시행권고

1) 총회 헌법위원회는 박노철 목사가 당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장로청원안건을 서울강남노회에 제출하여 허락한 결의가 유효한지와 현재와 같이 서울교회가 분쟁중인 상황에서 장로증원을 청원한 것이 허용되는지를 질의 받고, 2017. 6. 8.(예장총 101-947호)로 "장로의 선택(헌법 제6장(장로) 제41조(장로의 선택)을 위한 상회(노회)의 지시행위는 위법하며, **제98회기 총회헌법위원회의 해석사례 124번에 따라 교회가 분쟁시에는 장로증원을 청원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통보하였다.
 2) 총회장과 총회임원회는 2017. 7. 13. 총회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서울강남노회에 헌법위원회의 위 2017.6.8.자 헌법해석에 대하여 총회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에 의거하여 헌법절차에 따라 적법

하게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통지문(예장총 제101-1049호)을 발송하였다.

3. 증거의 요지

가. 갑제1호증 노회장의 공동의회 소집 지시 공문
 나. 갑제2호증 정기노회 소집공고문
 다. 갑제3호증 노문환, 서문석 장로의 사실확인서
 라. 갑제4호증 헌법해석통보(2017.6.8. 예장총 제101-1049호)
 마. 갑제8호증 위임목사 청빙승인결의 무효 소장
 바. 갑제9호증 총회재판국 권징사건 죄과사실 요지
 사. 갑제11호증 헌법해석통보(2017.1.11. 예장총 제101-450호)
 아. 갑제16호증의175 당회소집요청자료
 자. 갑제17호증 총회장의 헌법해석시행권고(2017.7.13. 예장총 제101-1049호)
 차. 원고와 피고의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4. 총회재판국의 판단

원고들은 위 장로증원청원에 대하여 서울강남노회가 한 장로증원허락결의 및 서울교회에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한 행위는 각각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는 바, 나누어 판단한다.

가. 지교회 당회의 결의 없는 장로증원허락 청원에 대한 상회인 노회의 허락결의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1) 장로교회는 목사와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대의제 방식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장로의 선출과정은 반드시 선출주체인 교인들의 총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대의기관 구성원에 대한 선출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 여부와 인원, 시기, 절차 등에 관하여 교인들의 대표기관인 지교회 당회의 결의가 반드시 선행되도록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당회를 통한 대의제가 장로교회의 핵심적 특징이고 당회는 노회와는 독립되어 지교회 교유의 의사를 결정하는 유일한 치리기관이므로 결국 장로의 선출은 지교회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만일 노회가 상회라는 지위를 앞세워 지교회의 장로 선택에 관한 당회결의도 없는 청원을 대신 허락한다면 이는 지교회 고유권한인 장로선택권을 지교회 내부사정과 관련도 없는 노회가 침해하게 되는 것으로 명백히 헌법상 교회의 자유 규정(헌법 정치편 제2조)에도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서울교회 다수측 장로들이 노회의 지시를 위반하고 **박노철 목사를 담임목사로 인정하지 않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는 당회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서울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당회를 개최라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장로증원을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과 제출증거에 의하면 박노철 목사가 2016년 수차례에 걸쳐 당회원들의 당회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정기당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안전상정이나 표결진행을 거부하는 등 당회를 파행시켜 왔고 연말정리 및 신년도 준비안건을 위한 당회소집요구에도 계속 불응하다가 원고장로들이 2017년 1월에 들어와 안식년시행을 계기로 대리당회장을 세워 시급한 업무를 처리하자 그때서야 형식상의 당회를 단 2회 소집한 이후 곧바로 서울강남노회에 장

로증원을 위한 청원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본다면 서울강남노회가 박노철 목사가 당회라도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

3) 또 인정된 기초사실 같이 총회 헌법위원회는 헌법해석을 통하여 교회가 분쟁 시에는 장로 증원을 청원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해석하였고, 총회장과 임원회도 서울강남노회에 그 유권해석을 헌법절차에 따라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에는 ‘헌법 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것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헌법해석사례를 보면 ‘헌법위원회가 헌법해석의 전권을 갖고 있으며 총회재판국은 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총회 제92회기 헌법해석사례 제62번 참조).

만일 교회가 분쟁 중에 있는 상태에서 교회의 유일한 처리기관이자 성경상 영적 우월성이 부여되는 기관인 당회의 구성원인 장로를 전교인들의 합의가 아니라 일방이 당회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 증원하게 된다면 지교회는 물론이고 교단의 평화와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으므로 **교회가 분쟁 중에는 장로증원을 청원할 수 없고 노회도 이를 허락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헌법 해석은 타당하다.**

4) 나아가 당회결의 없는 상회의 공동의회 소집지시와 달리 당회결의 없는 장로증원허락청원에 대하여

는 상회인 노회가 지교회 당회를 대체하여 이를 허락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근거규정도 없다. 따라서 **서울강남노회가 소속 지교회 당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장로증원허락 청원에 대하여 한 허락결의는 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나. 장로선출에 관하여 지교회 당회의 결의 없이 노회가 상회로서 한 공동의회 소집지시의 위법여부에 관하여

피고는 위 헌법 정치 제90조 제3항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④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단,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당회결의 없이 노회의 지시만으로도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교단 헌법규정상 장로 선출과 임직은 지교회 당회의 전속 권한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노회는 상회라 할지라도 지교회 당회의 선출결의도 없이 일반 안건도 아닌 장로선출 안건을 지교회 공동의회 안건으로 지정하여 개최하지 할 수는 없으므로 **당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위 서울교회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지시 또한 헌법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서울교회 장로증원청원 허락결의 및 피고의 공동의회 소집지시 행정행위는 각각 무효이므로, 그에 터잡아 박노철 목사가 같은해 4.30.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15명의 서울교회의 장로를 선출한 결의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5.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총회헌법 정치편 제68조, 제41조, 제90조 제3항, 헌법시행규정 제36조,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2017.6.8. 예장총 제101-947호), 총회 제98회기 총회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사례 124번, 총회 제92회기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사례 제62번, 헌법 권징편 제148조.

6. 결론

결국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가 2017.4.4. 제60회 정기노회에서 서울교회 장로증원 청원에 대하여 한 허락결의 및 피고가 2017.4.14. 서울교회에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한 행위는 모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그렇다면 헌법 권징 제164조 제1항,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판결한다.

2017년 9월 1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총회 재판국장 김진욱 목사 · 기소위원회의 '기소권 없음'은 위법
- 김진욱 목사 잘못 인정
단, 재항고인의 처벌불원의사에 의해 기각함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제101회 총회 주제 : "다시 거룩한 교회로(로마서 1:17, 레위기 19:2)"

행정지원본부
03128 서울시 중랑구 대림로3길 29, 309호(안정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전화 (02)741-4350(449211) 2층 (02)6008-2982 담당 : 홍은혜 실장

문서번호 예장총제 제101-530호
시행일 2017. 9. 14.
수신 오정수 장로
참조
제목 결정통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본 재판국은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오정수 장로 외 2인이 총회재판국장 김진욱 목사 외 1인에 대한 총회기소위원회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재항고건"(사건번호 : 제101-30호)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제3편(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4조(판결의 확정) 제35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제36조(재판송달의 기일)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결정 통보합니다.

첨부 : 총회 재판국 결정문, 글.

재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결정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101-30호

사건명 :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오정수 장로 외 2인이 총회재판국장 김진욱 목사 외 1인에 대한 총회기소위원회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재항고건"

재항고인 1 : 오정수, 성별 : 남 직분 : 장로

재항고인 2 : 노문환, 성별 : 남 직분 : 장로

재항고인 3 : 서문석, 성별 : 남 직분 : 장로

재항고인들의 변호인 : 임상현, 성별 : 남 직분 : 장로

피재항고인 1 : 김진욱, 성별 : 남 직분 : 장로

피재항고인 2 : 박상수, 성별 : 남 직분 : 장로

결정고지일 : 2017. 9. 13.

주 문

1.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신청을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정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재항고인들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를 서울강남노회를 거쳐 총회재판국에 재항고 신청하였던 서울교회 장로들이고, 피재항고인 김진욱 목사는 2016년 11월 18일 위 재항고 사건에 대한 재항고기각 결정 재판을 한 총회재판국장, 피재항고인 박상수 목사는 제101회기 총회에서 처음 선임된 총회재판국원으로 위 사건의 주심공임이었던 자이다.

2.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고소 이유
피재항고인들은 총회재판국이 2016년 11월 18일, 사건번호 제100-44호 재항고 사건의 결정과정에서, 재항고인들이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고소한 범인결정 명령 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되었으나 결의에 따라 고등검찰청에서 항고가 제기되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이 서류만을 근거로 판단하였고 또 총회재판이 범용심이지만 박노철 목사 측에서 결정문에 인용될 정도의 중요한 사실자료를 제출하였던 당면한 재항고인 측에 항고여부를 확인하거나 반문제기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그 기회를 박탈한 채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재판진행과정에서도 전원합의체 부과조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합의를 진행하고 재판은 본래 당사자들의 주장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그 밖에 주장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도 적절으로 심판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당면한 이 사건 변론과정에 현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판하여야 할 것인데, 변론과정에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당사자 쌍방 어느 누구도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을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등으로 결국 중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인정 등 재판결정 상의 오류와 재판국장 또는 주심공임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잘못을 범하여 헌법 권징 제3조 제1항(성경상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과 제2항(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경매된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과 제6항(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에 해당하는 죄과를 범한 것이라는 것이다.

3. 총회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과 재항고 사유
위 고소 건에 관하여 총회기소위원회는 2017.2.16. 헌법시행규정 제67조 제1

항 제4호 나항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소가 제기된 경우'를 적용하여 '기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는바 재항고인들의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기소가 제기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명백히 위법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신청이 된 것이다.

4. 당 재판국의 판단

당 재판국의 심리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면, 박노철 목사에 대한 재항고 사건 심리과정에서 당시 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되었으나 이미 항고절차에 따라 고등검찰청에서 재수사를 하고 있었고 이후 재기수사명령이 되어 현재까지도 지방검찰청에서 재수사를 하고 있어 결국 당시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던 위 무혐의처분 결정은 재항고 사건의 인용 또는 기각여부를 판단할 만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였던 사실, 총회재판국이 법률심이라고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 측에서 사실인정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사실인정에 관한 자료로 받아 사용하려면 당연히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 반론제기의 기회를 주어야 재판의 형평성에 부합함에도 그 기회를 박탈한 채 기각결정을 한 사실, 재판은 본래 당사자들의 주장에 포함된 사유에 심판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직권조사를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변론자료에 현출된 자료만을 토대로 심판하여야 할 것인데, 변론과정에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당사자 쌍방 어느 누구도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을 결정이유에 기재하여 마치 재판의 장소에서 박노철 목사 본인이나 제3자로부터 재판자료를 입수한 것이 아니냐는 재항고인들의 의문제기나 오해의 빌미를 제공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또 총회기소위원회의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기소권 없음' 처분은 동일사건에 대하여 이미 기소가 제기된 경우에 대한 처분인데 피재항고인들 스스로 이견과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견 재항고 사건의 대상이 된 총회기소위원회의 위 '기소권 없음' 처분은 위법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견 심리과정에서 피재항고인 김진옥은 위 전원합의부 재판과 재항고기각 결정과정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은 재판국장인 자신에게 있다며 자신을 기소명령 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다만 피재항고인 박상수는 당시 신임국원이었고 현재 건강도 좋지 않으므로 면책하여 달라고 호소하였고 피재항고인 박상수 역시 그 잘못을 시인하며 재항고인들에게 유감을 표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들은 피재항고인들의 개인적인 책벌만을 목적으로 재항고를 제기한 것은 아니라며 처벌불원외의사의 취지를 표시하고 있는 바, 당 재판국이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죄과를 인정하여 기소명령을 하더라도 결국 헌법시행규정 제67조 1항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아 다시 같은 '기소권 없음' 처분을 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당 재판국에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기소명령의 실익은 없다고 판단하여 이견 재항고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다.

5.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 권징 제66조 제1항 제1호

위와 같이 결정한다.
2017년 9월 1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결정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재항고인들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를 서울강남노회를 거쳐 총회재판국에 재항고 신청하였던 서울교회 장로들이고, 피재항고인 김진옥 목사는 2016년 11월 18일 위 재항고 사건에 대한 재항고기각 결정 재판을 한 총회재판국장, 피재항고인 박상수 목사는 제101회기 총회에서 처음 선임된 총회재판국원으로 위 사건의 주심국원이었던 자이다.

2.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고소 이유

피재항고인들은 총회재판국이 2016년 11월 18일, 사건번호 제100-44호 재항고 사건의 결정과정에서, 재항고인들이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고소한 법인카드 횡령 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되었으나 절차에 따라 고등검찰청에서 항고가 제기되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이 서류만을 근거로 판단하였고 또 총회재판이 법률심이지만 박노철 목사 측에서 결정문에 인용될 정도의 중요한 사실자료를 제출하였다면 당연히 재항고인 측에 항고여부를 확인하거나 반론제기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그 기회를 박탈한 채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재판진행과정에서도 전원합의부 분과조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합의를 진행하고 재판은 본래 당사자들의 주장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그 밖에 주장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당연히 이 사건 변론과정에 현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판하여야 할 것인데, 변론과정에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당사자 쌍방 어느 누구도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을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등으로 결국 중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인정 등 재판절차 상의 오류와 재판국장 또는 주심국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잘못을 범하여 헌법 권징 제3조 제1항(성경상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과 제2항(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과 제6항(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에 해당하는 죄과를 범한 것이라는 것이다.

3. 총회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과 재항고 사유

위 고소 건에 관하여 총회기소위원회는 2017.2.16. 헌법시행규정 제67조 제1항 제4호 나)항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소가 제기된 경우'를 적용하여 '기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는 바 재항고인들의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기소가 제기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명백히 위법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신청이 된 것이다.

4. 당 재판국의 판단

당 재판국의 심리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면, 박노철 목사에 대한 재항고 사건 심리과정에서 당시 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되었으나 이미 항고절차에 따라 고등검찰청에서 재수사를 하고 있었고 이후 재기수사명령이 되어 현재까지도 지방검찰청에서 재수사를 하고 있어 결국 당시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던 위 무혐의처분 결정은 재항고 사건의 인용 또는 기각여부를 판단할만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였던 사실, 총회재판국이 법률심이라고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 측에서 사실인정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사실인정에 관한 자료로 받아 사용하려면 당연히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 반론제기의 기회를 주어야 재판의 형평성에 부합함에도 그 기회를 박탈한 채 기각결정을 한 사실, 재판은 본래 당사자들의 주장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직권조사를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변론자료에 현출된 자료만을 토대로 심판하여야 할 것인데, 변론과정에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당사자 쌍방 어느 누구도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을 결정이유에 기재하여 마치 재판의 장소에서 박노철 목사 본인이나 제3자로부터 재판자료를 입수한 것이 아니냐는 재항고인들의 의문제기나 오해의 빌미를 제공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또 총회기소위원회의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기소권 없음' 처분은 동일사건에 대하여 이미 기소가 제기된 경우에 대한 처분인데 피재항고인들 스스로 이견과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견 재항고 사건의 대상이 된 총회기소위

원회의 위 '기소권 없음' 처분은 위법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견 심리과정에서 피재항고인 김진옥은 위 전원합의부 재판과 재항고기각 결정과정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은 재판국장인 자신에게 있다며 자신을 기소명령 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다만 피재항고인 박상수는 당시 신임국원이었고 현재 건강도 좋지 않으므로 면책하여 달라고 호소하였고 피재항고인 박상수 역시 그 잘못을 시인하며 재항고인들에게 유감을 표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들은 피재항고인들의 개인적인 책벌만을 목적으로 재항고를 제기한 것은 아니라며 처벌불원외의사의 취지를 표시하고 있는 바, 당 재판국이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죄과를 인정하여 기소명령을 하더라도 결국 헌법시행규정 제67조 1항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아 다시 같은 '기소권 없음' 처분을 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당 재판국에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기소명령의 실익은 없다고 판단하여 이견 재항고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다.

5.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 권징 제66조 제1항 제1호
위와 같이 결정한다.

2017년 9월 1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서울교회 전교인

일일수련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면" (느1:3)



1교시 서창원 목사



2교시 이규민 목사



3교시 박순오 목사





중단되었던 군선교사비 지급키로 결의

교회는 교회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지난 8개월간 중단되었던 군선교사비를 9월부터 60% 지급하기로 9월 6일 정기 당회에서 결의하였다. 비전2020본부(본부장 최광성장로)가 이 같은 당회의 결의 사항을 군선교 현지에 알리자 다음과 같은 답신이 도착하였다.

(편집부)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17일) 세례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7월에 17명을 실시 하였고 이번 주 13-15명 세례를 하려고 합니다.

서울교회의 회복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25사 포병 상송포교회 김명일목사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사도행전 20:24)

끝까지, 흔들림 없이 주어진 길을 걷는 서울교회의 행보를 위해 기도합니다!

광정 박재성 목사

어려움 중에서도 이 땅의 선교지를 찾고 찾아서 물질과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기를 기뻐하시는 서울교회와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제22사단 53연대 초도 중대와 대진소초를 섬기는 민간 성직자 김춘기목사입니다.

기복사입니다.

매주일날 오후 시간에 부대에 들어가 예배와 성경공부, 신앙상담을 통하여 병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사역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서울교회를 통해 후원 받는 선교비로 매주 간식을 준비하여 음식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부대가 6~7개월 정도 있다가 내륙에 있던 부대와 교체가 될 때면 매번 느끼는 감정이지만 잘 양육하고 세운 제자를 보내야하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만나는 장병들을 위해 기도와 돌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어느 종교를 믿고 있는가? 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것이 무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훈련소에서 세례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세례는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병사들이 10명중 6~7명은 됩니다. 이들에게 성경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9월 17일 주일에 부대에 가면 부대가 교체 되었기 때문에 또 장병들을 만나고 전도하며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선교 후원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저에게 있어 서울교회는 영원히 잊을수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지금 겪는 시련 속에 있다는 것을 믿기에 이곳에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전2020운동본부 그리고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을 담아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동해안 끝 자락에서 김춘기목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석을 앞두고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만 한편 참으로 송구합니다.

교우들의 아픔과 교회의 상처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와 회복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재차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신애목사

반가운 연락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얼마나 교회 회복과 정상을 위해 성도 여러분의 노고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당회와 성도들의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에 감동과 은혜가 밀려옵니다. 어려움 중에도 후원해 주시니 겸허히 수용하며 사명감당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교회와 당회와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늘 건승하십시오.

이금순목사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교회 당회와 성도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윤왕모선교사

서울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교회의 빠른 회복을 위해 간구드립니다.

김태식선교사



2010년 12월 군선교의 밤



진중세례식



진중세례식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 102회기 총회 열리다

- 주제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 총회 첫 날, 박노철 목사 퇴장 명령 받다

제102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가 지난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로 양재동 온누리교회에서 열렸다. 67개 노회 중 66개 노회가 모인 이번 제102회기 총회는 시작부터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며 '성총회'라는 말이 무색할 뿐이었다.



이미 서울교회 담임목사 지위를 상실한 박노철 목사는 총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남노회 총대들과 함께 총회 첫 날 오후에 총회장소에 들어갔다. 1500명의 전국 총대들이 있는 가운데 사회자로부터 9월 14일 판결에 의거(박노철 목사 청빙무효, 박노철 목사 위임목사 임직도 무효, 위임목사 지위 부존재), "박노철 목사는 부총회장 선거권이 없으니 퇴장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또 공천위원회 보고에서도 박노철 목사를 세계선교부 2년조 공천에서 삭제하고 반기로 가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00목사는 재심 판결이 날 때까지 박노철 목사의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해달라고 간청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총회 재판국이 총회 셋째날 오후 회무에서 총대들에게 그동안 해 온 재판 결과 등을 보

사의 청빙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총회 재판국이 9월 11일 박 목사의 위임목사 임직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교회 혼란만 가중시켰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항의했고 최00 목사는 "서울교회 개혁장로님들 때문에 서울교회 사태

[Web발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 이번에 총회를 통해서, 비록 우울한 분위기도 있었지만, 장로님과 많이 웃고, 잘 먹고, 같이 교제함으로 정말 힐링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서울교회가 마땅히 강남노회의 기쁨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함에도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멀지않아 그런 때를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 믿는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도 건승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올림

▶ 박노철 목사가 작년 총회 직후 강남노회 소속 장로들에게 보낸 문자로 『강남노회의 기쁨조』 라고 자신을 표현하였다.

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다. 특히 강남노회의 임00 장로는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의 판결을 예로 들며, 재판국이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임 장로는 "이미 법원이 박노철 목

실을 유폐하며 박노철 목사 감싸고돌기에 여념이 없었고 그 모습은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박노철 목사에게 썩은 동아줄을 내미는 것과 같았다. 노회는 서로 협의하며 교리의 순전함 위에 권징을 동일하게 하고 영적 지식과 바른 진리를 전파하며 배도와 부도덕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교회들의 모임이다. 그러나 강남노회는 지교회 위에 굴림하며 서울교회 교인 양측의 첨예한 대립을 뺏아 보고서도 자격이 없어 첫 날 총회장에서도 쫓겨난 박노철 목사의 저녁 식사 접대를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보아도 강남노회가 어떤 노회인지 알 수 있다. 강남노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박노철 목사에 대한 세 건의 판결을 한 행정재판국원들을 퇴출시키다 박노철 목사 쪽에 기울어진 것으로 알려진 '친박노철' 재판국원들까지도 모두 퇴출되고 말았으니 그야말로 강남노회는 제대로 자 충수를 던진 셈이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박노철 목사와 엘림의 비대위는 이런 상황을 "다 뒤집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고 하며 곤두박질치는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코메디를 하고 있다.

그릇된 가르침과 횡포에 맞서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이룬 두려움 없는 영혼 마틴 루터, 존 칼빈은 오직 진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부패한 교회를 뒤집었다. 거짓과 야합과 권모와 술수를 하나님 말씀의 권능과 기도의 위력으로 뛰어 넘은 후 서울교회 온 성도들은 이렇게 외칠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중 · 고등부 학부모 기도회

매 주일 12시 40분(2부예배 후)

중고등부는 매 주일 12시 40분(2부 예배 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504호(고등부 교사실)에서 중 · 고등부 학부모 기도회를 갖는다. 중고등부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자녀손(수험생, 유학, 군복부)을 위한 기도 후원자의 많은 참여 바란다.

동정

- 금주의 식사 : 김영선 집사 권택숙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수상 : 13교구 김정미 권사 2017 Salon of LA 국제 미술 살롱전 국회문화관광위원회장상 수상
- 찬조 : 최영란 권사 김예환권사
- 일일수련회 찬조 : 오윤결 집사 (어린이 선물)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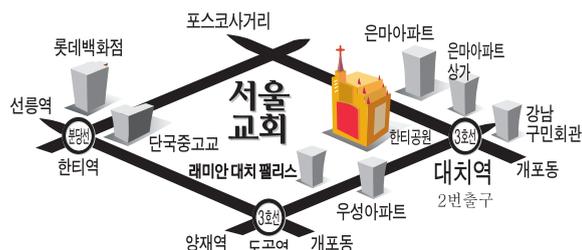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말씀과 기도로 우리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2. 우리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수험생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3.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 지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짧은이 예배	오후 2시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